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들어가며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준비했습니다.

C O N T E N T S

01 임신·출산

산모건강관리	4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4
출산비용 지원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긴급복지지원	5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입소	6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7

02 양육·생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0
드림스타트	10
보육료 지원	1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1
유아학비 지원	12
가정양육수당 지원	12
아이돌봄서비스	13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4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15
취약·위기가족 지원	1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6

03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8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공급	20

04 교육·취업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22
자녀 교육비 지원	22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3
취업성공패키지	23

05 금융·법률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5
미소금융	26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27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27
자산형성지원	28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28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보육료지원 가능합니다	29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30
미소금융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30
미소금융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31
4대공·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31



임신·출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산모건강관리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신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포함)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 청소년 산모(만 18세 이하)의 경우 1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약국포함) 사용가능
- 신청문의** 건강보험공단 또는 금융기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6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인 경우 지원
- 신청문의**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임신·출산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460,152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입소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등 지원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신부 입소가능)〉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두리홈	02-363-5722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애란원	02-393-4725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마음자리	02-563-7420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마포애란원	02-711-4725		새싹들의집	031-457-4383
	도담하우스	02-449-8893		광명아우름	02-899-0152
	바인센터	02-2671-0693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5
	성현원	051-545-9272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제주	애서원	064-773-2010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 기본형 미혼모자복지시설 외, 공동형 미혼모자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 참고.

입소문의 해당 시설 및 지자체,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전국 거점기관 안내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2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02-704-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55-8042
5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569-1546
6	광주	광주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51-9337
7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932-9934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03-9200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4398-4474
11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5
12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3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14	전남	여수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659-4171
15	경북	칠곡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333-5976
16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5
17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5-7015

신청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양육·생계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2019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2019년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 및 지원단가 (월 13만원 → 월 20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신고대상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 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신고방법 보건복지부 복지포털사이트(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

신고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조치사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월 20만원)

지원내용 2019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실비(최대 500만원)
 ※ 2019년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지원단가(월 18만원 → 월 3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포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임산부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경우 지원)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 아동 :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02-6901-0291)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1순위 :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5만 4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보육료) * 종일(07:30~19:30)기준

(단위:원/월)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454,000	400,000	331,000	220,000	220,000	220,000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 '16.7월부터 만 0~2세 아동을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가능한 한부모) 이외 일반 한부모 및 조손가구가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제출 필요 (종일형 요청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대상** 2001.1.1.~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2019년 바우처 포인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신청문의**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비 지원

〈2019년 지원금〉

(단위: 원/월)

과정	지원금액	
	국·공립	사립
교육과정 지원금	60,000	220,000
방과후과정 지원금	50,000	70,000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지원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문의 (방문신청) 영유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 : 본인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 단,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9,650원)				영아종일제 (월 193만원, 200시간 기준)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2,820천원)	8,203원 (85%)	1,447원 (15%)	7,238원 (75%)	2,412원 (25%)	154.4만원 (80%)	38.6만원 (20%)
나형 120% 이하(4,512천원)	5,308원 (55%)	4,342원 (45%)	1,930원 (20%)	7,720원 (80%)	115.8만원 (60%)	77.2만원 (40%)
다형 150% 이하(5,640천원)	1,448원 (15%)	8,202원 (85%)	1,448원 (15%)	8,202원 (85%)	29만원 (15%)	164만원 (85%)
라형 150% 초과	-	9,650원	-	9,650원	-	193만원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만 18세 미만(공동육아나눔터) 자녀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 (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 나눔터 관련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급
-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부처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감감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농림축산 식품부	정부양곡할인 지원(50%)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전기] 한국전력공사(☎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환경부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시·군·구 관할 수도사업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이동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월 최대 21,500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전용 ARS(1523), 이동통신사 대리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누리카드 (기초·차상위, 연 8만 원)	문화누리카드 (☎1544-3412, www.mnuri.kr)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http://voucher.kspo.or.kr)
법무부	과태료 50% 이내 감경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법무부
한국교통안전 공단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한부모가족)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1577-0990)
지자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취약·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북한이탈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위기가족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지원본부 (☎02-3479-7600)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336,000원), 27시간(월 378,000원)
-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 (연장)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공동생활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신청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신청문의

권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02-363-5722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031-216-9081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6053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042-585-3004
강원	원주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5-8314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9
충남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3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063-280-2522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054-244-9701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4-833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공급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		순위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1·2순위	
공공임대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형, 한부모가족인 산단근로자)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1순위)	
	매입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매입임대 I, II	1순위*(임신 중 또는 출산, 입양자녀)
		청년매입임대, 리모델링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세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전세임대 I, II	1순위(임신 중 또는 출산, 입양자녀)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각 시·도 도시공사

거주지 시·군·구청



교육·취업

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대상 학생 미혼모가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거주지(원적교 관할 지역) 외 전국 어디서든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범위 확대)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나래대안학교	02-393-4720	강원	마리아의집	033-264-0194
부산	마리학교	051-253-7543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043-285-4438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천안새소망의집	041-568-0695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울산	마리학교	051-253-7543	경북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세종	대전자모원	042-934-6934	경남	로뎀학교	055-292-4747
경기	홀트고운학교	031-216-9004	제주	무궁화아카데미	064-773-2010

신청문의 해당시설,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 메뉴 (<http://www.mogef.go.kr>)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통신비)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장학금	대학재학 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학자금 대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지원내용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현황·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사후관리지원 :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신청문의 지역별 센터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http://saeil.mogef.go.kr>)
각 센터별 문의 후 신청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1544-119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8세~만 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 : 취업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원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 직업능력증진(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 지급)
- 3단계 : 집중취업알선(취업 시 최대 150만원 지급)
- * 만 35~64세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30원만원 최대 9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 (☎1350)

이외에도 자활근로, 정부지원일자리 등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자활근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신청
- 정부지원일자리 : 일모아 (www.ilmoa.go.kr)



금융·법률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이제 법 전문가가 대신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2019년 신청)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는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소득) 2018년 부부의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구분	총 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자녀장려금(2019년 신청)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8.12.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소득) 2018년 부부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70만원 지급

신청문의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인터넷) 및 ARS (☎1544-9944),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 세무서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종류〉

상품명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창업자금	7천만원	6년 이내	4.5%
운영자금	2천만원	5.5년 이내	4.5%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5.5년 이내	4.5%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5년 이내	4.5%
취업성공대출	3천만원	3년 이내	4.5%
대학생·청년햇살론	12천만원	13년 이내	4.5%
교육비지원대출	5천만원	6년 이내	4.5%
취약계층자립자금	12천만원	6년 이내	4.5%
취약계층교육비대출	5천만원	6년 이내	4.5%
취약계층임차보증금대출	2천만원	2년 이내	4.5%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햇살론, 바뀌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kinfa.or.kr>)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급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19.7.1. 시행)

(개정 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 긴급지원

→ (개정 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 해당 시 지원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6.25.시행)

(개정 전)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회요청

→ (개정 후) 집행권원 확보위해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회요청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한부모가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구비 필요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 (월 10만원~33만원)
- 신청문의**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매월 5만원~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 5~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 신청문의** 지역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서류준비사항

- ① 아동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셋 중 하나라도 모르면 해당)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②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자료 등)
-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친자검사비 지원 : 전국 17개 권역별 미혼모부 거점기관(7p참고)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가정법원에 확인신청서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양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 - 이용안내 - 양식모음

3. 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미혼부라면 법률구조공단이 출생신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보육료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담당자용)

- 수신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과 '아기'를 함께 기재(이름이 있는 경우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방법 남·여 구분(3 또는 4)를 기재 후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작성
 - * 서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 쌍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아이 1, 둘째아이는 2로 기재

(예시1) 2016. 1.1. 출생한 남아의 경우

구분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16010130000
서면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160101-3

- 처리근거 : [복지부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p.391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담당자용)

의료급여전산번호 시스템을 이용 의료급여전산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지원가능

① 보육사업 안내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자격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2.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②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방법

출생신고 완료전인 미혼부 자녀는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자'로 적용

* 자료구분(4)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⑦	: 성별(남: 1, 3 /여: 2, 4)
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1, 여: 2)
③ : 자료구분(4)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④~⑥ :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2000년 00, 2007년 07)
	⑩~⑬	: 일련번호

- 처리근거 :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82p 참고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다음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생계자금을 최대 12백만원 이내로 지원(연 금리 3.0%)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자녀의 교육자금을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연 금리 4.5%)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미소금융 취약계층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또는 3개월 이내에 거주 예정인 자 중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주거자금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연 금리 2.5%)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문의	제도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7)

2019 한부모 인식개선 슬로건

편견을 지우면 당당 한부모가 보입니다

전화
상담

한부모(미혼모·부)상담전화

1644-6621

이용시간

월 ~ 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용

www.mogef.go.kr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복권위원회